한일과거사 갈등과 해법

한국근현대역사기행

-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징용인 4인의 손해배상 판결 = 일제하 강제동원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라고 규정, 피해자 '개인' 의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반인도적 행위에 국가 면제(주권 면제)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
- ->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징용인 4인의 손해배상 명령-> 해당 일본기업의 한국 내 자산 강제 압류?

- 1) 대법원 판결의 근거
-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적'인 식민지배이므로, 일본 법원이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와 원고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하는 것은 잘못
-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이라고 규정

- 「청구권협정」으로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되었다, 피징용자 임금, 업무상 상해 질 병 사망 부조금은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었다는 주장 반박 <=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의 청구권 자 체는 「청구권협정」 만으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청구권 협 정으로 그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된 것에 불과함
-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 (국제 인권법)
- => 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 2) 일본의 반응
- 기존에는 일본 정부 및 최고재판소도 원칙적으로 협정에 의해 개 인의 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음
- 1991년 8월 27일, 외무성 야나이 순지 조약 국장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한일 양국이 국가로서 가진 '외교보호권'은 상호 포기했지만,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

- 2007년 일본 최고법원 판결: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 (니시마쓰건설)에 배상 청구에 대해 "중국과 일본 간 배상 관계에서 외교보호권은 포기되었지만,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 자발적인 '보상' 노력 촉구. 니시마쓰 건설, 강제동원 피해자와 '화해' 대응. 히로시마 고등재판소는 2004년 1인당 550만 엔 지급 명령

- 한일관계의 변화
-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 국내 일본기업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의 외교적 해법?
- 피해자 중심주의, 피해자 단체 반발
-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유효(최종적, 불가역적) 전제 하에 한일 양국 간 교섭 진행

- 한국 법원(서울중앙지법) 2021년 1월, '위안부' 배상 판결: <u>일본</u> 정부가 위안부 12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
- 한국 법원(서울중앙지법) 2021년 6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결정(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근거, 소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논리)

- 한국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년 8월, 일제하 근로정 신대 할머니 등 4명의 채권 압류소송에서 LS그룹 계열사(엘에스 엠트론)이 미츠비시중공업에 지급할 물품 대금 8억5천만원 채권 압류 결정.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한국법원 판결 이행 거부에 대 해 한국 내 일본 기업들의 자산 압류, 강제 현금화 절차(9월 취하; 미츠비시중공업의 자회사 공시오류 이유)
- 한국 법원 판결의 집행 문제
- 해당 일본기업의 한국 내 자산 강제 압류 혹은 일본정부 국내 자산 강제 압류는 집행될 것인가?
- 법적인 해결 vs 외교적 해결

-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내용
- 2015.12.28 한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 형식(양국 정부간 합의)
-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상이 서울에서 아베 신조 총리의 '사과문'을 읽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식 '사죄'. 일본 '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일본 정부 차원의 책임 통감, 총리 차원의 사죄와 반성 표명), 10억 엔을 화해치유재단에 출연-> 생존 피해자(47명 중 35명) 포함 유족등 92명에게 44억원 지급
-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명시
-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한국정부가 적절히 해결에 노력)
- <=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본 정부와 합의했다면서 반발. 피해자와 유족 헌법소원 제기(피해자 중심주의)

- 2019.12.27 헌법재판소 각하
- 정부간 합의사항은 위헌 심리 대상이 아니다.
- 2015년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국가 간 '조약'인가? 비구속 적 '합의'인가?
- 구두 형식, 한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양국 정상 전화추인 vs 서면 형식, 국무회의나 국회 동의, 조약체결 절차 없음. 법적 구속력(구체적인 권리와 의무 표현) 없음
- 2018년 9월 한국정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통고. 잔금 6억엔 반 환 제시

- 2023년 11월 23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 구회근) 재판장
- "1심 판결(= 한국 법원이 일본의 주권행위를 재판할 수 없다) 취소, 일본 정부(피고)는 피해자(원고)에게 청구금액과 지연손 해금을 지급하라."
-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위안부의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는 첫 번째 항소심 판결.
- 이용수(95) 할머니(2007년 미국 하원에서 증언, 위안부 문제 국제 이슈화한 장본인)와 다른 피해자 유족들이 2016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각하=소송이 요건이 되지 않는다=재판부가 재판할 사안이 되지 않는다고 본 1심=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 법원에서 재판받지 않는다'는 국가면제 법리를 "취소"
- 항소심은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의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주장.
- ="국가면제와 관련한 국제법 체계가 개인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 "유엔 국가면제협약과 해외 입법·판결 등에서 '사망이나 상해를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가해국의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 일본 정부의 행위가 한국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며, 실체적으로 '일본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재판부
- 위안부 피해자들은 정상적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음. "일본제국 공무원들"은 일본의 옛 형법에서 금지하는 '국외 이송 목적 약취·유인·매매' 행위를 한 것이고, 일본정부가이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거나 방조한 것 " 이라고 판결.
- 배상금은 피해자당 2억 원씩. 일본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인 배상 촉구.
- 식민지 경험 약소국들의 **피해 구제와 피해자 회복의 초석이 될** 판결이라고 평가.

- But 실제 배상금 수령은 난제
- 2021년 1월, '배춘희 할머니(별세) 등 위안부 피해자 11명에게 1명당 1억 원을 배상 판결도 아직 미집행.
- 피해자들의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 일본 정부는 관련 서류를 송달받 지 않는 방법으로 대응
- 피고인=일본정부는 전범기업이 피고인 강제징용 판결처럼 자산 압류 등으로 배상을 강제하기 어려움. 국내 소재 일본 정부의 외교공관등은 국제법인 비엔나 협약에 따라 강제매각 불가
- Cf. 을사늑약(외교권 박탈조약) 이후 대한제국의 해외 외교공관은 모두 일본이 접수, 매각했음. 워싱턴 주미공사관 2012년 문화재청 환수

- 2023년 3월 6일, 정부 발표=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 받은 한국 기업 16곳으로부터 재원 조성. 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기업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
- 1974년 특별법 제정으로 8만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원 지급. 2007년 또다시 특별법 제정, 7만8000여 명에 대해 약 6500억원 정부 재정으로 배상.
- 한일간 "보편적 가치" 공유, 안보·경제·과학기술·글로벌 어젠다 협력 파트너=2018년 연간 방일 753만 명, 2019년 558만 명. 방한 2019년 327만 명
- 한일 교역 규모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무역 중 6~7%, 우리 기업에 대한 일본과 일본 기업의 투자는 전체의 22%

- 일본측 반응
- 한국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합의 파기나 재협상 요구는 아님)은 양국 간 합의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라고 비난.
- 한국 법원의 판결 집행(재산 압류)은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 위반(대량학살이나 고문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 외에는 주 권면제=국가면제 인정 vs 피해자 청구권)
-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경우 판결은?
-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법률적 해결 대상인가? 외교적 해결 문 제인가?
- 일본 측 사과는 진정성을 인정받고 있는가?

3.한일 과거사 갈등의 출발점

• 1965년 한일협정

(한일기본조약;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1조 양 체약 당사국 간에 외교 및 영사 관계를 수립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대사급 외교사절을 지체없이 교환한다. 양 체약 당사국은 또한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u>이미 무효</u>임을 확인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제195(Ⅲ)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u>유일한 합법 정부</u>임을 확인한다.

제4조~제7조(생략) 부칙: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3.한일 과거사 갈등의 출발점

- 제2조 "이미 무효"는 영문본에서 "already null and void"로 표 현됨
- <= 한국 정부 : 1910년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은 당초부터 '무효'(원천무효설)
- <= 일본 정부: 1910년 조약은 당초에는 '유효'
- ⇒ 식민지 지배는 '불법강점' vs '합법지배'
- ⇒ 이미 무효already null & void의 시점 문제 (1905, 1910 or 1945 or)

을사조약(1905)의 불법성

을사늑약 무효론

- (1) 제목도 없는 조약
- (2) 위임장, (주권자의) 비준서 없음
- (3) 강박(물리적 강제/조약 대표자에 대한 협박, 강제) cf. 국가에 대한 강제(전쟁에 의한 결과)
- (4) 국제법적 무효의 사례 파리대학 법학과 프란시스 레이 교수의 무효론(1906)
 - ->미국 국제법 학회 의뢰에 의한 1934년 하버드 법대 보고서
 - ->1963년 유엔 국제법 위원회 보고서

병합조약(1910)의 불법성

병합조약 무효론

- (1) 순종의 서명(이척李坧) 위조 cf. 이완용에게 내린 위임장
- (2) 병합선포 칙유(비준서에 해당)의 순종 자필 서명 결여

한일간 조약 유무효 논쟁

- 일본학계 유효부당론(합법절차론)
- 국가 대표에 대한 강박과 국가에 대한 강박 구별
- 모든 국제 협정에 비준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제국주의 시대 당시의 분위기로는 조약 '유효', 다만 도덕적으로 부당, 피해 '배상'이 아닌 '독립축하금', '화해치유금' 지급
- 한국학계의 대응
- 원천무효론, 불법강점론, 피해보상 청구권 논리
- 국제학계의 판단

1965년 한일협정='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및 4개의 협정(재일 한국인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어업협정,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의 통칭

- 1) 한일 국교 정상화의 배경
- 미국의 '한미일' 삼각안보체제 구축 의도
-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 동원 필요 (무상 3억, 유상2억, 수출입은행 차관1억달러)
- =>한국 군사정권의 경제적 필요+일본기업의 한국 진출 '정치적 타협'
-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청구권 문제 미해결
-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식민 지지배 불법성 문제 미해결)

- 2) 1965년 한일협정의 내용과 쟁점
- 한국 정부 : 1910년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 된 모든 조약은 당초부터 '무효'
- 일본 정부 : 1910년 조약은 당초에는 '유효'
- ⇒식민지 지배는 '불법강점' vs '합법지배'
- ⇒이미 무효already null & void의 시점?

- 「청구권협정」
- 제1조 : 일본이 한국에 3억 달러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2억 달러에 해당하는 "장기 저리 차관(연이율 7.5%, 7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을 제공
- 제2조 :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청구권…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 3) 1965년 한일협정의 문제점
-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라는 취지는 없음
- 개인 청구권 상실을 의미하지 않음
- 4) 법적인 문제
- 국가 간 조약에 대한 법적 해석의 문제
- 국내법과 국제법의 충돌
- 5) 인권문제
- 국제노동기구(ILO) 1999년 전문가위원회 보고서 일제하 강제동원 은 제29호 강제노동금지협약 위반

유럽의 사례(나치독일피해)

- 독일 정부와 독일 기업 공동으로 강제노동 피해에 관해 '기억 책임 미래' 기금 설립
- 2000년 8월, 독일 정부 및 6,400개 독일기업, 약 100개국 166만 명 이상 피해자에게 약 44억 유로(약 7,200억 엔) 배상금 지급

유럽의 사례(나치독일피해)

• 폰 바이츠체커 전 서독 대통령 연설(1985년 5월 8일)

"문제는 과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과거를 바꾸거나 일어나지 않은 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눈을 감는 자는 결국 현재도 맹인이 됩니다. 비인간적인 행위를 가슴에 새기려 하지 않는 자는 또 그러한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일본의 조선 침략론

한국근현대역사기행

1.일본의 조선침략 논리와 병합론

- 1) 병합론의 배경
 - 대동합방론(-> 대동아공영론)
 - 인종주의(러일전쟁=황백인종간의 대결)
 - 일본맹주론
- 일본 천황이 지배하는 새로운 세계로서 '동양(東洋 Orient)'이란 용어 등장
- 서양(Occident)의 반대 개념이나 원래 유럽인에게 동 양Orient은 오늘날의 중동 지역을 가리키는 단어
- 근대 일본이 새로 창출해낸 동양 개념은 동, 서가 만난 가운데 서양 문명 수용에서 가장 앞선 일본이 만들어 낸 용어(동양의 맹주 일본)

1.일본의 조선침략 논리와 병합론

- 2) 병합론의 논리
 - ① 합법절차론(조약유효론)
 - ② 동양평화론. 방어론(러일전쟁=동양평화를 위한 전쟁)
 - ③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 동종동문론
 - ④ 문명화론. 시정개선론. 자치육성정책

2) 병합론의 논리

① 합법절차론(조약유효론)

-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군사적 강점)
- -1904년 8월 22일 고문용빙협약(시정개선)
- -1905년 7월 카쓰라태프트 '밀약', 8월 제2차 영일동맹, 9월 포츠 머스조약->미국, 영국, 러시아 등 국제열강 승인
-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외교권 박탈)
- 1906년 2월 1일 통감부 업무 시작

2) 병합론의 논리

- 1907년 7월 24일 정미조약(차관정치)
- 1909년 7월 12일 사법 및 감옥 사무 위탁
- 1910년 6월 24일 경찰사무 위탁
- 1910년 8월22일 병합조약 체결
- =>병합조약 전에 이미 사법권 경찰권까지 모든 권한 위탁, 병합조약은 단지 마지막 남은 절차에 불과했다는 주장. 합법절차 강조

2) 병합론의 논리

② 동양평화론. 방어론

"한반도가 열강의 분쟁 대상이 되면 '동양평화'를 위협하는 화근 (禍根)이 되므로, '일본의 안전'을 위해 할 수없이 러시아와 전쟁을 벌여 동양평화 달성" "러일전쟁 승리 후에도 한반도의 시정이 개선되지 않고 치안 불안(ex 의병 폭도), 또 다시 동양평화가 깨질 우려가 있어 병합을 단행했다"는 논리

- 한반도의 불안이 곧 일본의 안전을 위협한다=순망치한론에 입 각, 한일 양국간 '지정학적 위치'를 숙명론적 병합 필연성으로 규정하는 지리결정론, 방어론 cf: 한반도는 만주 침략을 위한 교 두보
- 후쇼샤 판(우익계) 교과서: 한반도는 '일본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라고 표현
-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두 차례의 전쟁에서 거액의 군비를 들여 한국을 위해 싸웠음에도 화근을 두절할 수 없어 동양평화를 위 해 병합단행 논리

③ 일선동조론 . 동종동문론

"한일병합은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예와는 달리 원래 '동인종'이며, '언어 • 풍속 • 근본'이 같은 양국이 '담소'하면서 진행시킨 것"

"일본의 조선 통치는 영국-인도, 프랑스-마다가스카르, 미국-하와이 - 필리핀과 같은 지배와 종속관계, 모국과 식민지가 구별되는 관계가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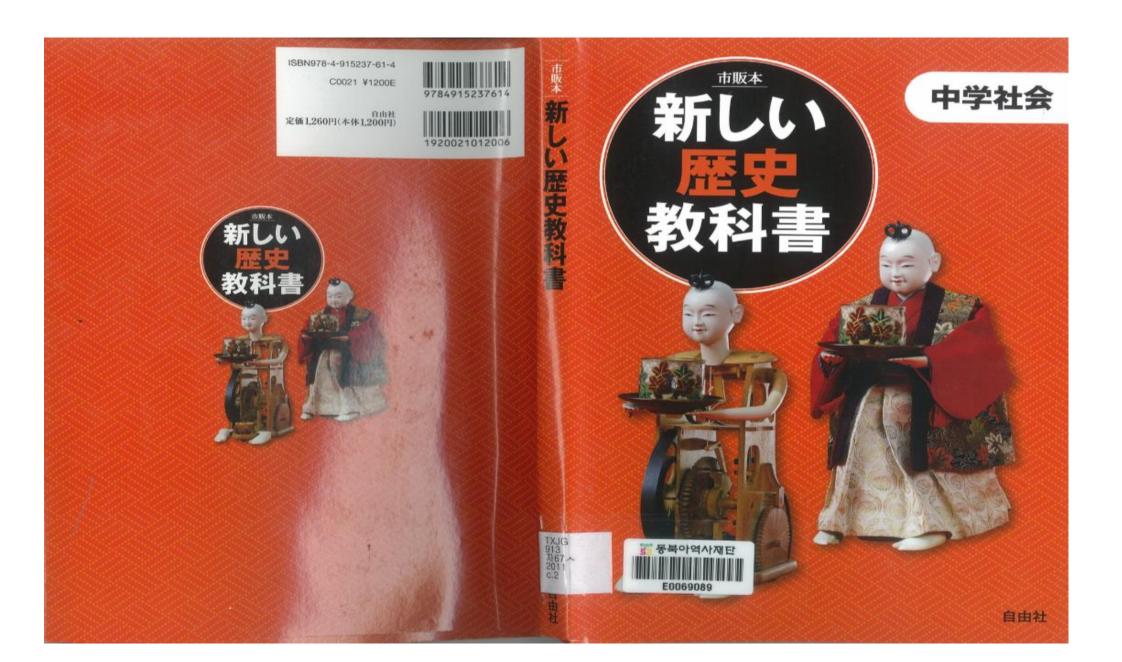
④ 문명화론. 시정개선론. 자치육성정책

"일본이 조선을 도와 청으로부터 '독립국'을 만들었으나, 도저히 자력으로 시세를 쫓아갈 수 없기에 이 '빈약국'을 '제국의 구성원' 으로 받아들여 '일본국 신민'과 동등하게 '문명'의 경지에 이르게 해주려는 게 병합의 본지"

"통감부 설치 이후 4년간 '보호정치'와 '시정개선'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을 잃었지만 종래 피보호국 상태에서 벗어나 '세계 일등 국가'에 진입하게 되었고, 민중은 일약 '제국의 신민'이 되어 '내지인과 균등한 대우'를 향유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마치 '작은 회사가 큰 회사에 합병되어 명예와 이익을 함께 얻은 것'과 같고, '가난한 집'의 자제가 하루 아침에 '부호의 양자'가 된 행유과 같은 것"

- 대표적인 역사왜곡 교과서(지유샤自由社,이쿠호샤育鵬社)/채택률이 높은 도쿄서적 교과서
- 지유사『새로운 역사교과서』163쪽
- <역사의 양측 조선반도와 일본>
- "동아시아 지도를 보자. 일본은 유라시아 대륙으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바다에 떠있는 섬나라이다. 이러한 일본을 향해 <u>대륙으로</u>부터 하나의 팔과 같이 조선반도가 돌출되어 있다".
- "일본은 구미열강의 아시아 침략이 강화되는 중에 <u>조선에 진출하</u>지 않으면 일본의 전도前途도 위험하다고 보고..."





近隣諸国との国境画定 現在の日本の国土の範囲は、おおむ ねこのときに確定した。



伊藤博文

■貧しい少年時代

明治国家の建設に中心的な役割を果たした をからいる。 伊藤博文(1841~1909年)は、幕末の長州藩で、 武士より身分の監い足解の子として育った。 別めて红戸へ行くお祝いの日、報名物の「自 漁」を食べて、泣いて喜んだほど貧しかった。 青年となった伊藤は、吉田松陰の松下村塾で 学んだ。人間が出世するのは「すぐ村た人との 出会い」だと教えられた彼は、若いときから多 くの先輩に接し、その才能を認められた。討 繁運動の中で木戸孝允に引き立てられ、明治 政府では、28歳ではから その後、すたにから その後、すたにから その後、すたにから その後、すたにから その後、ないたのは「すぐ村た人との 出会い」だと教えられた彼は、若いときから多 くの先輩に接し、その才能を認められた。討 のをでは、28歳でよりから その後、すたにから その後、大久保別知事になっている。 その後、大久保別論にも才能を認められ、若 くして参議(今日の大臣)となった。

■絶賛された「日の丸消説」

治倉便節団が欧米に2年近く張遠されたとき、伊藤は大使の岩倉具視について副使になった。このとき英語が話せる伊藤は、使節団を代表して演説した。

その中で伊藤は、数百年続いたわが国の占い制度は、「一個の弾丸も放たれず、一流の血も流されず、撤廃された」(廃藩置県のことをさしている)と述べた。そして日本の国旗にある赤い丸は「今まさに洋上に昇ろうとする太



伊藤博文の生家 (山口・伊藤公資料修蔵)

陽を象徴し、わが日本が欧米文明のただ中に 向けて知道するしるもであります」としか、 くった。これが名高い日の丸演説で、方面の 取ります。

伊藤はその後も、日本を欧米列葉と対準な 力をもつ近代国家にするための事業に、他の がれよりも全力投球して、明治政府の中心的 存在となった。

■憲法制定に向けての努力

伊藤が残したもっとも大きな業績は、憲法 10 制定と国会の開設だった。彼は1882 (明治15) 年から1年以上もヨーロッパに留学し、ドイツ の憲法学者などから講義を受け帰国した。

1885 (明治18) 年に、45歳で初代の総理大臣に就任した伊藤は、その後数年間、多くの 18 人々と相談しながら、憲法草薬を練りあげた。彼は憲法制定の選輯で、多くの保守派の反対をおし切り、予算決定と法律は議会の承担を必要とする原則を責いた。こうして、中部が心肌を注いだ大日本帝国憲法は、1889 (明治22) 年に発布された。ドイの憲法などに学びながらも、日本の伝統に基づいた内容は、民期の急進的な自由民権論者や、諸外国のマスコミからも称賛されるものだった。

伊藤はほかの元老たちと異なり、生涯にわ 等たって財産もたくわえず、だれとでもわけへ だてなくつき合っていた。生前の彼が語った 言葉に、次のようなものがある。

「酒を飲んで遊んでいるときでも、私の頭から終始、国家という2字がはなれたことにない。私は子孫のことや家のことを考えたことがない。いついかなる場合でも、国家のことばかりだ」。伊藤の活躍を支えたのは、まさにこの「国家を思う心」だった。

歴史の両側 ▼ 朝鮮半島と日本

■日本の独立と朝鮮半島

東アジアの地図を見てみよう。日本はユー ラシア大陸から少し離れて、海に浮かぶ鳥国 である。この日本に向けて、大陸から一本の

6 腕のように朝鮮半島が突き出ている。両国のこの地理的な関係は、長い歴史の上で重要な意味を持ってきた。

古来、朝鮮半島からは、中国などの進んだ 文明が日本に伝えられた。しかし同時に、朝 9 鮮半島に日本の安全をおびやかす勢力がおよ

んだこともあった。日本は、中国大陸と朝鮮 半島の動向に注意をはらわなければならなか った。日本が古代律令国家を形成したのも、 東アジアの中で自立することをめざしたもの

15 だった。

鎌倉時代に、元寇の拠点となったのも朝鮮 半島だった。反対に、豊臣寿吉が、朝鮮半島 に大軍を送ったこともあった。江戸時代には、 から884年を送ったこともあった。江戸時代には、 対馬藤を通して、徳川奉府との良好な関係が 即 続いた。

■朝鮮の近代化と日本

明治新政府は、政権樹立後、すぐに朝鮮と 国交を結ぼうとした。しかし、中国の清朝に 開資していた朝鮮は、外交関係を結ぶことを

* 担続した。朝鮮を開国させた1876 (明治9) 年の日朝後 好条規は、その第1条で、「朝鮮国は許生の国」であるとうたった。これは、清朝の影響から朝鮮を切り舞すねらいがあった。

着側以上におそろしい大国は、不凍港を求 がて東アジアに目を向け始めたロシアだった。 ロシアは1891 (明治24) 年にシベリア鉄道の建 設に着手し、その脅威はひたひたと迫ってき た。朝鮮半鳥が、東方に領土を拡大しつつあ るロシアの支配下に入れば、日本を攻撃する 格好の基地となり、島国の日本は、自国の B) An CASA 助衛が困難となると考えられた。

そこで日本は、朝鮮の間国後、近代化を始めた朝鮮に対して軍制改革を援助した。朝鮮からも視察団がやってきて、明治維新の成果を学ぼうとした。朝鮮が他国におかされない国になることは、日本の安全保障にとっても重要だった。

■朝鮮をめぐる日清の対立

一方、清は、東アジアの情勢を別の見方でとらえていた。1879 (明治12) 年、長い期、清 にも 朝貢してきた琉球が沖縄県となり、日本の領土に組みこまれたことは、清朝にとって大きな衝撃だった。その後、清仏戦争に敗れて、もう一つの朝貢国ベトナムがフランスの支配下に入った。朝貢国が次々と消滅していくことは皇帝の徳の義退を意味し、中国を中心とする東アジアの秩序が崩壊する危機を示すものだった。

そこで清は、最後の有力な朝貢国である朝鮮だけは失うまいとし、日本を敵とみなすようになった。日本が日清・日露の一つの戦争をたたかうことになる背景には、このような東アジアの国際関係があった。



- 이토 통감의 '자치'육성정책, '문명화'정책 강조
- 이토를 군부 중심의 무단파와 비교
- 문치파로서 이토를 '선의'의 '보다 나은' 제국주의자로 재평가하는 일본 학계
- <= 점진적 병합론



韓国服の伊藤博文 伊藤は首相を 引退後、1906年に日韓協約による 初代韓国就能として駐任した。 1909年満州視察の途中、ハルビン 駅で韓国独立の志士、安重根に暗 殺された。



朝鮮総督府 朝鮮総督府は、韓国を併合した1910 (明治43) 年に京城 (現在のソウル) に 設置され、1945 (昭和20) 年まで朝鮮半島を統治した。





이토의 한복사진

- <u>도쿄서적, "러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는 인도와 중국 등 아시아</u> 제국에 자극을 주어 일본을 모방한 근대화나 민족독립 운동이 고조되었다"
- '근대국가로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색인종의 국가인 일본 이 10배의 국가예산과 군사력을 지닌 세계 최대의 육군대국인 백인제국 러시아를 이김으로써 식민지 민족에게 독립에의 희망 을 주었다'고 서술

한일 과거사 갈등 해법은 있는가?

- 여러분의 생각은?
- 어떤 해결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가?
- 무엇이 변해야 한일 과거사 갈등은 해결될 수 있는가?

과거를 잊을 수 있나? Or 잊어야 하나?

-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 베트남의 사례
- 1954년 디엔비엔푸 전투에서 베트남 북부 공산세력 승리. 식민 지에서 자력으로 제국주의 점령군을 몰아낸 첫 사례
-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 후 공산혁명
- 2024년 디엔비엔푸 전투 전승 70주년 기념식에 프랑스 대표단 참여. 베트남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선언

"과거는 직시하되 미래를 바로 보자"